

『기술혁신전문펀드(5호)』 2024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2024년도 「기술혁신전문펀드(5호)」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 개요

항 목	세부내용				
위탁운용 금 액 및 선 정 운용사 수	○ 첨단산업 육성 (단위: 개, 억원)				
	지원 분야	선정 운용사 수	출자 금액	출자 비율	최소 결성금액
	AI 기반 신산업 <small>(AI자율제조·디지털바이오·기후테크)</small>	2	700 <small>(각 350)</small>	50%	1,400 <small>(각 700)</small>
	○ 산업생태계 강화 (단위: 개, 억원)				
	지원 분야	선정 운용사 수	출자 금액	출자 비율	최소 결성금액
CVC 스케일업	1	200	50%	400	
출자대상 투자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○ 「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법상 집합투자기구, 투자조합 포함 - 공고일 시점의 현행 법규에 따른 적법·유효한 투자기구일 것을 요하되, 펀드 결성 시 별도 협의 ※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, 본 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 				
운 용 사 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서 접수일 현재 '출자대상 투자기구'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의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국내 설립 법인 ○ 공동 운용(CO-GP)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				
운 용 사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* 한국성장금융: www.kgrowth.or.kr (출자사업 공고) 				

항 목	세부내용
접수일시 및 심사결과 발 표	○ 접수 : 2024년 5월 27일(월) 16:00까지 ○ 발표 : 2024년 6월 중 ※ 심사결과 발표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
펀 드 결성시한	○ 선정일로부터 5개월* *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하에 연장 가능

※ 「지역산업활력」, 「첨단민군협력」, 「중견기업혁신」 펀드는 별도 일정으로 공고 예정

2.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비율

- 국내 중소·중견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*은 제외)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
 - *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·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
-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산업부 R&D 수행 경험 보유 기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 투자

분야	세부 내용
AI 기반 신산업 (AI자율제조· 디지털바이오· 기후테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 ①~④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^{주1)} ① AI 기반의 자율제조^{주2)}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^{주3)}을 추진하는 기업의 R&D 활동(별첨6)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 투자 ②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바이오 분야^{주4)}의 제조혁신 및 기반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기업의 R&D 활동(별첨6)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 투자 ③ 에너지신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^{주5)} 기업의 R&D 활동(별첨6)에 약정총액의 15% 이상 투자 ④ 우수 기술기업^{주6)}에 투자집행금액의 80% 이상 투자 <p>주1) 단일 투자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 주2) AI 기반 로봇 제조, 로봇 부품 제조 및 자율제조 분야 세부항목은 「AI 자율제조 혁신 전략 포럼」의 자율제조 개념 및 「혁신성장 공동기준(5차 개정)」(이하 “혁신성장 공동기준”)의 로봇, 로봇 부품, 자율제조를 준용(별첨1) 주3) AI·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(별첨2)을 접목하여 산업 전 과정의 융합·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활동 주4) 바이오 분야 세부항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바이오 분야를 준용(별첨3) 주5)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(과기부, 제2022-55호) 및 혁신성장 공동기준 내 에너지 신산업 및 기후테크 품목을 재구성(별첨4) 주6)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(T15) 이상이거나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또는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평가 또는 산업부 「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방안」에 따른 기후가치평가를 받은 기업</p>

분야	세부 내용
CVC 스케일업	<p>○ 아래 ①,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^{주1)}</p> <p>①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(별첨5) 또는 초격차 프로젝트 분야^{주2)}에서 운용사 모기업(계열사 포함) 또는 펀드 출자기업(LP)과 협력^{주3)}하는 국내 중소·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</p> <p>② 우수 기술기업^{주4)}에 투자집행금액의 80% 이상 투자</p> <p>주1) 단일 투자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 주2) 산업부 「초격차 프로젝트」 11대 핵심투자분야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미래 모빌리티, 핵심소재, 첨단제조, 지능형 로봇, 항공·방산, 첨단바이오, 차세대 원자력, 에너지신산업) 주3) 기술 이전, 공동 R&D·기술사업화, 기술 구매, 기술 판매, 연구 위탁 계약, 기술 지도·자문, 주문자 개발생산(ODM),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(OEM), 합작 법인(Joint Venture) 설립, 기업 인수(M&A) 등 주4)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(TI5) 이상이거나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또는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평가를 받은 기업</p>

3. 주요 출자조건

항 목	세부내용									
운 용 사 출자비율	<p>○ 약정총액의 1% 이상*</p> <p>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,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</p> <p>* 「상법」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운용사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 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(단,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)</p>									
존속기간	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									
투자기간	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									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									
운용보수	<p>○ 관리보수 :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구 분*</th> <th>≤500억원</th> <th>≤1,000억원</th> <th>≤1,500억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결성일~3년 (약정총액 기준)</td> <td rowspan="2">2.2% 이내</td> <td rowspan="2">1.7% 이내</td> <td rowspan="2">1.2%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3년~만기 (투자잔액 기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결성일~3년: 약정총액 기준 / 3년 이후~존속기한: 투자잔액 기준</p> <p>**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상기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</p> <p>○ 성과보수* : 기준수익률 6% 초과수익의 20% 이내</p> <p>※ 펀드별 보수 체계는 선정 시 상기 범위 내에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</p>	구 분*	≤500억원	≤1,000억원	≤1,500억원	결성일~3년 (약정총액 기준)	2.2% 이내	1.7% 이내	1.2% 이내	3년~만기 (투자잔액 기준)
구 분*	≤500억원	≤1,000억원	≤1,500억원							
결성일~3년 (약정총액 기준)	2.2% 이내	1.7% 이내	1.2% 이내							
3년~만기 (투자잔액 기준)										

항 목	세부내용								
핵심 운용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하고, 전체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 ○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주목적 투자 완료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 ○ 핵심운용인력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*를 초과할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투자기간 만료 또는 주목적 투자 완료 펀드는 미포함 ○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펀드운용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								
출자자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기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협의 하에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책기관 및 정책성 펀드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- 해외출자자(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)가 참여하는 경우 - 기관투자자 및 법인 외 개인출자자 등이 참여하는 경우 								
수탁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최종 펀드 결성시 출자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								
회계 감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								
펀드 전자보고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펀드 전자보고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								
추가 성과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기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기술혁신전문펀드 앞 배분될 초과 수익의 10% 이내에서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AI 기반 신산업」 분야 우수 IP 사업화*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7 1384 1433 1485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우수 IP 사업화 기업 투자(비율**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15% 이상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20% 이상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25%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인센티브 지급 비율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5%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7.5%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10%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우수 IP(가치평가 금액 5억원 이상, SMART 특허등급 BBB등급 이상, 삼극특허 중 하나 이상에 해당)의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진 ** 비율 산식 = 인센티브 해당 투자 건수 ÷ 총 투자 건수 	우수 IP 사업화 기업 투자(비율**)	15% 이상	20% 이상	25% 이상	인센티브 지급 비율	5%	7.5%	10%
우수 IP 사업화 기업 투자(비율**)	15% 이상	20% 이상	25% 이상						
인센티브 지급 비율	5%	7.5%	10%					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 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 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해야 함 ○ 운용사가 선정된 본 펀드와 공동으로 동일 기업에 투자 또는 자금 제공(이하 "공동투자")을 위해 공동투자자를 모집하거나, 새로운 펀드·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, 우선적으로 한국성장금융에게 공동투자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 과정에서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								

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(미해소),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·시정명령·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- ※ 다만,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,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(직원인 경우) 또는 문책경고(임원인 경우)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최소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 시,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

5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 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
□ 기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**2024.3.31.(일)**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6. 선정절차 및 일정

□ 선정 절차

○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제안심사 → 최종 선정

□ 선정 일정*

일자	내 용	비 고
'24. 5. 3.(금)	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	홈페이지 공고
'24. 5. 27.(월)	제안서 접수	접수시간 : 10:00~16:00
'24. 6월말	최종 선정	개별 통지
'24. 11월말	선정일로부터 5개월 내	

* 「지역산업활력」, 「첨단민군협력」, 「중견기업혁신」 펀드는 별도 일정으로 공고 및 선정 예정

*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7.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

□ 지원방법

○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*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당일 지정된 접수시간 내 제출

*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(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)

○ 제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8부)를 제출

- 분량 :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(발표 당일 PT자료, 파일 별도 지참)

□ 출자 설명회

○ 일시 : 2024년 5월 10일(금)

시간	분야
14:00~15:00	AI 기반 신산업, CVC 스케일업

○ 장소 : 한국성장금융 대강당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 SK증권빌딩 11층)

- * 단, 출자 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
- ** 출자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운용사는 2024년 5월 8일(수)까지 하기(8. 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) 메일주소로 참석인원 관련 정보(참석 인원수, 성함, 직급 등)를 송부하여야 하며, 운용사별 참석인원은 4인을 초과할 수 없음
- *** 본 출자 설명회 외 별도의 대면 또는 비대면(온라인) 설명회는 추가 개최하지 않음
- **** 지역산업활력, 첨단민군협력, 중견기업혁신 펀드의 경우, 별도 일정으로 공고 예정으로 설명회도 별도로 진행

8. 접수처 및 문의 방법

접수처 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 SK증권빌딩 11층)

문의방법 : 한국성장금융 산업금융2팀

분야	연락처	E-mail
AI 기반 신산업 (AI자율제조·디지털바이오·기후테크)	02-2090-9145 02-2090-9166	hyl@kgrowth.or.kr sww@kgrowth.or.kr
CVC 스케일업	02-2090-9141 02-2090-9180	answerkim@kgrowth.or.kr jmkim@kgrowth.or.kr

2024년 5월 3일

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

※ 위 공고문의 세부 내용은 내·외부 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별첨1

AI 기반 자율제조 분야 대상 품목

「AI 자율제조 혁신전략 포럼」의 자율제조 개념 및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항목을 선별, 기준 제시

구 분		품 목		비고
AI 자 율 제 조	무인화	1-1	• 디지털트윈	능동적 자율생산 (AI기반 실시간 의사결정, 설비제어, 최적화)
		1-2	• 지능형 예측 및 분석	
		1-3	• 스마트센서	
	통합	2-1	• 스마트물류시스템	IT-OT의 통합 (IT시스템-제조설비의 연결·통합 제어), 제조 가치사슬 데이터 연계 (제품, 공정설계 변경 → 생산 자동 반영)
		2-2	• 사물인터넷(IoT, M2M 포함)	
	SW	3-1	•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	AI-데이터 기반 전체 공장 제어 SW (Software Defined Factory)
		3-2	•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(RPA)	
		3-3	• 빅데이터	
		3-4	• 차세대 데이터 저장	
	HW	4-1	• 협업로봇(코봇)	제조로봇 전 공정 활용
		4-2	• 무인 운반 시스템(AGV)	
		4-3	• 자율 모바일 로봇(AMR)	
		4-4	• OHT(Overhead Hoist Transport)	
		4-5	• 하이브리드 로봇	
	공정	5-1	• 입체머신비전	유연 공정, 원격제어 (공장 레이아웃 프리, 셀 생산방식)
		5-2	• 입체프린팅	
		5-3	• 미세가공	
		5-4	• 지능형기계	
		5-5	• 첨단소재가공시스템	
		5-6	•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	
		5-7	• 하이브리드 제조	

* 「AI 자율제조 혁신전략 포럼」 자율제조 개념 및 2023 혁신성장 공동기준(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, 2023년3월) 참조, 원문 내 AI 기반 자율제조 품목을 재구성함

별첨2

AI·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대상 품목

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AI, 빅데이터, 로봇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별, 기준 제시

구분		품목			
1	AI (인공지능)	1-1	• 입체머신비전	1-12	• 스마트물류시스템
		1-2	• 스마트팩토리 솔루션	1-13	• 디지털트윈
		1-3	• 지능형기계	1-14	• 사이버보안
		1-4	• 지능형 서비스로봇	1-15	• 인메모리컴퓨팅
		1-5	• 드론(무인기)	1-16	• 지능형교통체계
		1-6	• 자율운항선박	1-17	•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
		1-7	• 지능형공조시스템	1-18	• AI칩
		1-8	• 인공지능 진단	1-19	• 인감교감 소셜로봇
		1-9	• 5G/6G 통신	1-20	• 음성인식/처리 센서
		1-10	• 인공지능	1-21	• AI 기반 콘텐츠 개발
		1-11	• 대화형 플랫폼	1-22	• 금융데이터분석
2	빅데이터	2-1	• 실내공기질 관리	2-7	• 차세대 데이터저장
		2-2	• 예측분석 디지털 프로그램 (데이터기반 임상연구)	2-8	• 양자기술(Quantum Technology)
		2-3	• 스마트클래스	2-9	• 애드테크
		2-4	• 빅데이터	2-10	• 에듀테크
		2-5	• 데이터시각화	2-11	• 공유경제 플랫폼
		2-6	• 스마트시티	2-12	• 금융플랫폼
3	로봇	3-1	• 협업로봇(코봇)	3-3	• 웨어러블로봇
		3-2	• 지능형 서비스로봇		

* 2023 혁신성장 공동기준(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, 2023년 3월) 참조, 원문 내 해당 부문 품목을 재구성함

별첨3

바이오 분야 대상 품목

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별, 기준 제시

구 분		품 목			
1	디지털바이오 인프라 구축	1-1	•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	1-2	• 의료정보시스템
2	유전자 편집·제어·복원	2-1	•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	2-3	• 유전자 진단예측
		2-2	• 유전자 활용 치료	2-4	• 액체생체검사
3	줄기세포 치료기술	3-1	• 재생의료		
4	인공지능신약 플랫폼	4-1	• 예측분석디지털 프로그램	4-3	• 인공지능 진단
		4-2	• 의료/바이오 진단시스템		
5	인공 유사장기/ 바이오닉스	5-1	• 바이오/인공장기	5-3	• 의료용 임플란트
		5-2	• 의료용 화학재료(생체적용)	5-4	• 바이오배터리(인체적용에 한함)
6	첨단뇌과학	6-1	• 뇌컴퓨터 인터페이스	6-2	• 후각센서
7	전자약	7-1	•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	7-3	• 스마트알약
		7-2	• 신경자극·전극조절술	7-4	• 바이오센서
8	디지털치료제	8-1	• 가상현실기반 의료기기	8-3	• 맞춤형웰니스케어(모바일헬스)
		8-2	• 소프트웨어 의료기기		
9	디지털그린 공장	9-1	• 정밀농업	9-4	• 종자·개발 육종
		9-2	• 농업용미생물	9-5	• 스마트파밍
		9-3	• 생물비료		
10	마이크로바이옴	10-1	• 장내미생물치료		
11	첨단 신약	11-1	• 바이오신약	11-3	• 혁신신약
		11-2	• 개량신약		
12	병원체 극복기술	12-1	• 치료용항체	12-4	• 바이오시밀러
		12-2	• 핵산 기반 백신 및 치료제	12-5	• 경피약물전달
		12-3	• 나노 약물전달체(DDS)		

* 2023 혁신성장 공동기준(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, 2023년 3월) 참조, 원문 내 해당 부문 품목을 재구성함

** 관련 기술 개발 포함

별첨4

에너지 신산업 · 기후테크 분야 대상 품목

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에너지 신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별, 기준 제시

구 분		핵심 기술분야	품목	
1	무탄소 /저탄소 에너지	태양광	1-1	• 태양전지
			1-2	• 태양광발전(건물일체형 포함)
		태양열/수열/지열	1-3	• 재생열에너지(태양열/지열/수열)
		풍력	1-4	• 풍력발전
		해양에너지	1-5	• 해양에너지(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)
		수력	1-6	• 수력발전
		바이오에너지	1-7	• 바이오매스에너지
		수소·암모니아 발전 석탄액화·가스화	1-8	• 무탄소가스발전(수소, 암모니아)
		원자력	1-9	• 원자력발전
	1-10	• 소형모듈원자로		
	핵융합에너지	1-11	• 핵융합발전	
2	탄소배출 연·원료 대체	수소	2-1	• 수소에너지(생산·운송·저장시설 포함)
			2-2	• 연료전지
		바이오매스	2-3	• 바이오매스에너지
	폐자원	2-4	• 폐자원에너지	
3	에너지 생산·소비 효율 최적화	발전효율	3-1	• 탄소저감 연·원료 대체
			3-2	• 제조업 공정 개선을 통한 탄소 감축
			3-3	• 폐열회수
		수송효율	3-4	• 스마트물류시스템
			3-5	• 전기·하이브리드차 인프라/서비스
			3-6	• 스마트퍼스널모빌리티
		건물효율	3-7	• 제로에너지빌딩/친환경에너지타운
			3-8	• 건물전기화
			3-9	• 가정용에너지관리
4	온실가스 포집·저장·활용	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·활용	4-1	• CCUS(탄소 포집/활용/저장 기술)
		메탄(CH ₄) 처리	4-2	• 생물학적 탄소제거
		기타 온실가스 처리 및 대체 탄소흡수원	4-3	• 직접포집(Direct Air Capture)
5	에너지 공급/수요 유연성 향상	전력 통합	5-1	• 스마트그리드
			5-2	• 가상발전소
			5-3	• 분산에너지시스템
			5-4	•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
			5-5	• 초고압직류송배전
			5-6	• 스마트직류배전
			5-7	• 동적송전용량측정기술
			5-8	• 무선전력송신
			5-9	• 원격검침 인프라
			5-10	• 에너지저장장치(ESS)
		열 통합	5-11	• 지능형공조시스템
		전력·비전력 부문 간 통합	5-12	• 섹터커플링

* 2023 혁신성장 공동기준(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, 2023년 3월) 및 「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, 과기부, 제2022-55호」 온실가스 감축기술 참조, 원문 내 해당 부문 품목을 재구성함

별첨5

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대상 품목

□ 국가첨단전략기술*은 별표의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

* 산업부 「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 (고시 제2023-108호, 2023.6.2.)

⇒ 총 17개 기술을 지정(▲반도체 8, ▲디스플레이 4, ▲이차전지 3, ▲바이오 2)

【별표 :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】

분 야	기술명
반도체 (8개)	▶ 16나노 이하급 D램 에 해당되는 설계·공정·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
	▶ 16나노 이하급 D램 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
	▶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 에 해당되는 설계·공정·소자 기술
	▶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 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
	▶ 픽셀 0.8 μ m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·공정·소자 기술
	▶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 (Display Driver IC) 설계 기술
	▶ 14나노급 이하 파운드리 에 해당하는 공정·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
	▶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에 해당되는 FO-WLP, FO-PLP, FO-PoP, SiP 등 공정·조립·검사기술
디스플레이 (4개)	▶ AMOLED 패널 설계·제조·공정·구동 기술 (3,000ppi 이상의 초소형, 500ppi 이상의 중소형, FHD 이상의 중대형,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) (모듈 공정 기술은 제외)
	▶ 반치폭 40nm 이하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·제조·공정·구동 기술 (색재현율 REC2020기준 90% 이상, LCD와 모듈기술은 제외)
	▶ 크기 30 μ m 이하 마이크로 LED 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·제조·공정·구동 기술 (초대형 칩크기 30 μ m 이하, 모바일 칩크기 20 μ m 이하, 초소형 칩크기 5 μ m 이하)
	▶ 크기 1 μ m 이하의 나노 LED 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·제조·공정·구동 기술(모듈기술은 제외)
이차전지 (3개)	▶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, 공정, 제조 및 평가기술(에너지밀도가 280Wh/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, 252Wh/kg 이상인 각형 배터리, 280Wh/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, 260Wh/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)
	▶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, 제조 및 공정기술(니켈함량 80% 초과)
	▶ 600mAh/g 이상 초고성능 전극 (실리콘그래파이트 복합음극, 황 양극, 리튬금속 음극)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(전고체전지, 리튬황전지, 리튬금속전지) 설계, 공정, 제조 및 평가기술
바이오 (2개)	▶ 바이오향약 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·정제 기술 (다회용 바이오향약 세포배양: 1만리터 이상)
	▶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 (자가 및 동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배양 규모: 100 dose/lot 이상, 장기별 오가노이드 목적 세포 구성률: 80% 이상, 장기별 오가노이드 생존율: 80% 이상)

별첨6

R&D 활동 적용 범위

- R&D 활동 적용범위는 기업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준을 참고하여 준용
- R&D활동 투자 여부는 투자일 이후 2년 이내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

[참고] R&D 활동 주목적 투자 주요 인정 사례 (예시)

- ①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이 반도체 부품 사업 수직계열화를 위해 개발 중인 생산 장비에 사용되는 임베디드SW를 연구개발
 - (업종) 표준산업분류코드: 26129 (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)
- ②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D기업이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산업 로봇 및 자동화 기계 관련 IT·SW를 연구개발
 - (업종) 표준산업분류코드: 58222 (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)